

診療 엑스線危害의 防禦에 關한

醫療法 施行規則條文 拔萃

第8章 診 痘線危害의 防禦

第37條 (엑스線裝置의 申告) 診療用 엑스線裝置(이하 “裝置”라 한다)를 設置한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그 設置日로부터 10일이내에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서울 特別市長,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다음 各號의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.

1. 醫療機關의 名稱 및 所在地
2. 裝置의 製作者名, 型式 및 臺數
3. 裝置의 定格出力
4. 엑스線診療室의 엑스線障害防禦에 대한 構造設備 와 豫防措置의 概要
5. 엑스線診療에 종사하는 醫師, 歯科醫師 및 엑스線士의 姓名과 그 엑스線診療業務에 종사한 經歷

<改正 1966. 9. 12 保令 183>

第38條 (變更 등의 申告) 醫療機關의 開設者가 前條 各號의 事項을 變更하거나 그 裝置의 사용을 廢止한 때에는 그 變更 또는 廢止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서울 特別市長,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.

<改正 1966. 9. 12 保令 183>

第39條 (엑스線診療室의 防禦) ①裝置를 設置한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그 엑스線診療室의 天井, 바닥 및 壁의 外側에 있어서의 엑스線의 線量率은 다음 表에서 정하는 線量率이하가 되도록 그 防禦設備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間接撮影을 實施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區 分	每週延使用時間	線 量 率
診斷用	3時間미만	每時間 32미리렌트겐
	3시간이상 6시간미만	每時間 16미리렌트겐
	6시간이상 12시간미만	每時間 8미리렌트겐

12시간이상 每時間 4미리렌트겐
治療用 24시간미만 每時間 4미리렌트겐
24시간이상 每時間 2미리렌트겐
②小容量診斷用(最大管電壓 60. K.V.P. 10m. A 이하) 엑스線裝置를 診療室내에 設置使用하는 醫療機關에 있어서도 그 診療室에 前項의 規定에 의한 防禦設備를 하여야 한다. <改正 1966. 9. 12 保令 183>

第39條의2 (엑스線從事者の 許容被照射線量 등) 엑스線診療에 종사하는 醫師, 歯科醫師 및 엑스線士 등(이하 “엑스線從事者”라 한다)의 最大許容被照射線量 및 最大許容蓄積線量은 다음과 같다.

1. 엑스線從事者の 全身・造血器管生殖線 및 눈의 水晶體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.
가. 最大許容蓄積線量은 다음式(이하 “基本式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算出되는 線量으로 한다.
基本式 $D=5(N18)$
基本式에서 D는 렌트겐單位의 線量을, N은 年單位의 年齡을 表示한다.
- 나. 基本式에 의하여 算出되는 數值의 限度안에서 3個月間에 3렌트겐까지의 被照射를 許容할 수 있다.
- 다. 엑스線從事者の 過去에 있어서의 被照射線量이 不明한 때에는 그 不明한期間은 1年間에 5렌트겐의 比率로 被照射된 것으로 看做하여 蓄積線量을 算出한다.
- 라. 過去에 1週 0.3當レン트겐의 被照射許容條件下에서 종사한 者는 그 蓄積線量이 基本式에 의하여 算出되는 數值에 이를 때까지 年間 5렌트겐을 초과하여 被照射되지 아니하도록 한다.
- 마. 18歲이 전에 엑스線 作業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는 年間 5렌트겐을 초과하여 被照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30歲에 이르기까지는

基本式에 의하여 算出되는 數値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.

바. “다” “라” 및 “마”의 規定에 불구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基本式에 의하여 算出되는 最大許容蓄積線量의 범위 안에서 年間 被照射線量을 12 렌트겐까지 許容할 수 있다.

2. 前號에 規定한 이외의 身體部位 또는 器官에 대한 3月間의 最大許容被照射線量은 다음과 같다.
가. 皮膚·骨 및 甲状腺에 대하여는 8렌트겐
나. 手足·前脣 및 足關節에 대하여는 20렌트겐
다. “가”·“나” 및 前號에 規定한 이외의 單一器官에 대하여는 4렌트겐

3. 엑스線從事者の 年間最大許容被照線量은 다음과 같다.

가. 全身, 造血器官, 生殖線 및 눈의 水晶體에 대하여는 1.5렌트겐
나. 皮膚, 骨 및 甲状腺에 대하여는 3렌트겐
다. 手足, 前脣 및 足關節에 대하여는 7.5렌트겐
라. “가” 내지 “나”에 規定한 이외의 單一器官에 대하여는 1.5렌트겐

4. 엑스線으로 인한 事故로 2.5렌트겐 미만의 被照射를 받았거나 또는 蓄積線量이 基本式에 의하여 算出되는 數値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線量을 2렌트겐으로 除하여 얻은 數의 年數를 경과할 때까지는 基本式에 의하여 算出된 數値에 그 초과된 線量을 加算한 線量을 許容線量으로 한다.

5. 被照射線量을 算出함에 있어서 診療를 받기 위하여 被照된 線量과 自然放射線에 의하여 被曝된 線量을 除外한다. <新設 1966. 9. 12 保令 183>

第39條의3(엑스線裝置의 測定과 記錄) 裝置를 設置하고 있는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6月마다 1回이상 그 裝置의 照射線量을 測定하여 그 結果를 記錄하여야 하며 이를 5年間 保存하여야 한다.

<新設 1966. 9. 12 保令 183>

第39條의4(엑스線從事者の 健康管理) ①裝置를 設置한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엑스線從事者の 엑스線으로 인한 障碍豫防 및 障害有無를 위한 健康診斷을 每年 2回이상 實施하여 그 結果를 記錄하여야 하며 이를 5年間 保存하여야 한다.

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은 다음 各號에 의한 問診·檢査 또는 檢診의 方法으로 行한다.

1. 問診은 다음 事項에 대하여 行한다.

가. 엑스線으로 인한 職業性障害의 有無
나. 障害症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그 業務場所, 業務內容, 業務期間 및 蓄積線量

다. 기타 放射線에 의한 被曝狀況

2. 檢査 또는 檢診은 다음에 대하여 行한다.

가. 皮膚

나. 末梢血液중의 白血球·赤血球數 및 血色素量

다. 末梢血液像

<新設 1966. 9. 12 保令 183>

第39條의5(放射線障害者의 보고)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前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行한 結果 엑스線으로 인한 障害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엑스線從事者가 있을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,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<新設 1966. 9. 12 保令 183>

第39條의6(엑스線防禦施設의 改修命令) 서울特別市長,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第37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中告를 받은 때에는 當該裝置의 防禦施設을 調査하고 그 結果 障害發生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防禦施設의 改修를 命하여야 한다. 前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.

<新設 1966. 9. 12 保令 183>

第40條(限地醫藥業者의 從事地域指定等) 法附則第4項의 規定에 依한 地域은 本令公布日로부터 60日以內에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여 公告한다.

第41條(醫藥機關의 施設利用) 総合病院 病院 또는 齒科病院의 開設者 또는 管理者는 當該醫藥機關診療業務에 支障이 없는 限 그 建物의 一部設備, 機械 및 器具를 그 醫療機關에 從事하지 아니하는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診療 또는 研究에 使用하게 할 수 있다.

第42條(採血 및 輸血業務를 行하는 醫療機關) 採血 및 輸血業務를 行하는 醫療機關은 臨床病理檢查施設과 적어도 다음 各號의 器具 및 試藥과 施設이 있어야 하며, 採血에 있어서는 1人當 240cc 와 480cc를 單位로 하고 抗凝固劑는 240cc 인 경우에는 80cc, 480cc 인 경우에는 120cc로 하여야 한다.

1. 器具 및 試藥

가. 冷藏庫

나. 顯微鏡

다. 遠心分離機

라. 體重器

마. 血壓計 및 體溫計

바. 乾燥器·滅菌器 및 恒溫槽器

사. 흔그래스

아. 血球計算器

자. 培養器

차. 肝機能検査器

카. Anti A Anti B 및 Anti RH
타. 血色素量定用器具 및 試藥
파. 梅毒 및 마라리아 原虫検査用試藥

2. 施設

- 가. 待期室
나. 休息室
다. 採血室
라. 血液貯藏室 <新設 1965. 8. 5 保令 161>

附 則

- ①(施行日)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②(經過措置) 本令施行前에 放射線 裝置를 한 醫療機
關의 開設者 또는 管理者는 本令施行日로부터 1月內에
第37條 各號의 事項을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

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

附則 <1963. 6. 1 保社部令 第110號>

이 令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 다만, 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
附則 <1964. 11. 23 保社部令 第148號>

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
附則 <1966. 9. 12 保社部令 第161號>

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
附則 <1966. 9. 12 保社部令 第183號>

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


- ◎ 品質保證
- ◎ 價格低廉
- ◎ 信用本位

其他 國內外 各種齒科器材 一切具備

代表 全洪基

서울特別市 中區 南大門路 5街 63番地

太陽電波社 内

電話 22-1753 · 28-2391